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2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영진·박해철·이정문

조 국・허 영・백혜련

박희승 • 박지원 • 서삼석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 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 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함)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

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 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 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책임보험 가입)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21조의2(책임보험 가입)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 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 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 을 지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글 시는 신기자동자동신자입자 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u>로 정한다.</u> 제5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신 설>

3. ~ 10. (생략)

②·③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자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